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0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7일

발의자 : 김육영, 양순임, 이용진, 소형준,
정병기, 정윤주, 김경이, 임태근,
경수현, 이인순, 이호건, 진선아,
강수진, 임현주, 권영애

1. 제안이유

기존 중증장애인 중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범위 확대는 사업장의 매출 증대와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안 제6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 추후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11. 7. ~ 2023. 11.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

사를 말한다.

제3조 중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구매 함”을 “우선구매함”으로, “한다)조례”를 “한다) 조례”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특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생산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북구의회

3.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영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

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

른 구매목표비율

제8조제2항 중 “제7조 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 ----- -----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 ----- -----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 ----- -----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영 제28조제1항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 한다.

4. “구매목표율”이란 영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관 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특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함-----

한다) 조례-----
----- 조례
에서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구 산하 출연 · 투자 · 출자기
관

<신 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구
청장은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
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
기 위하여 영 제28조 제1항 별
표 3에 해당하는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
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
2항과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
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
약 으로 구매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성북구의회

3.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

-- 위하여 -----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의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
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장애인기
업제품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1항 및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7조 제1항의 우선구매 이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7조제1항-----

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 ----- -----. ③ (현행과 같음)
---	---